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

201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 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금연지도원은 강남구 내에서 활

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5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의견 제출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주요경력 및 추천사항 등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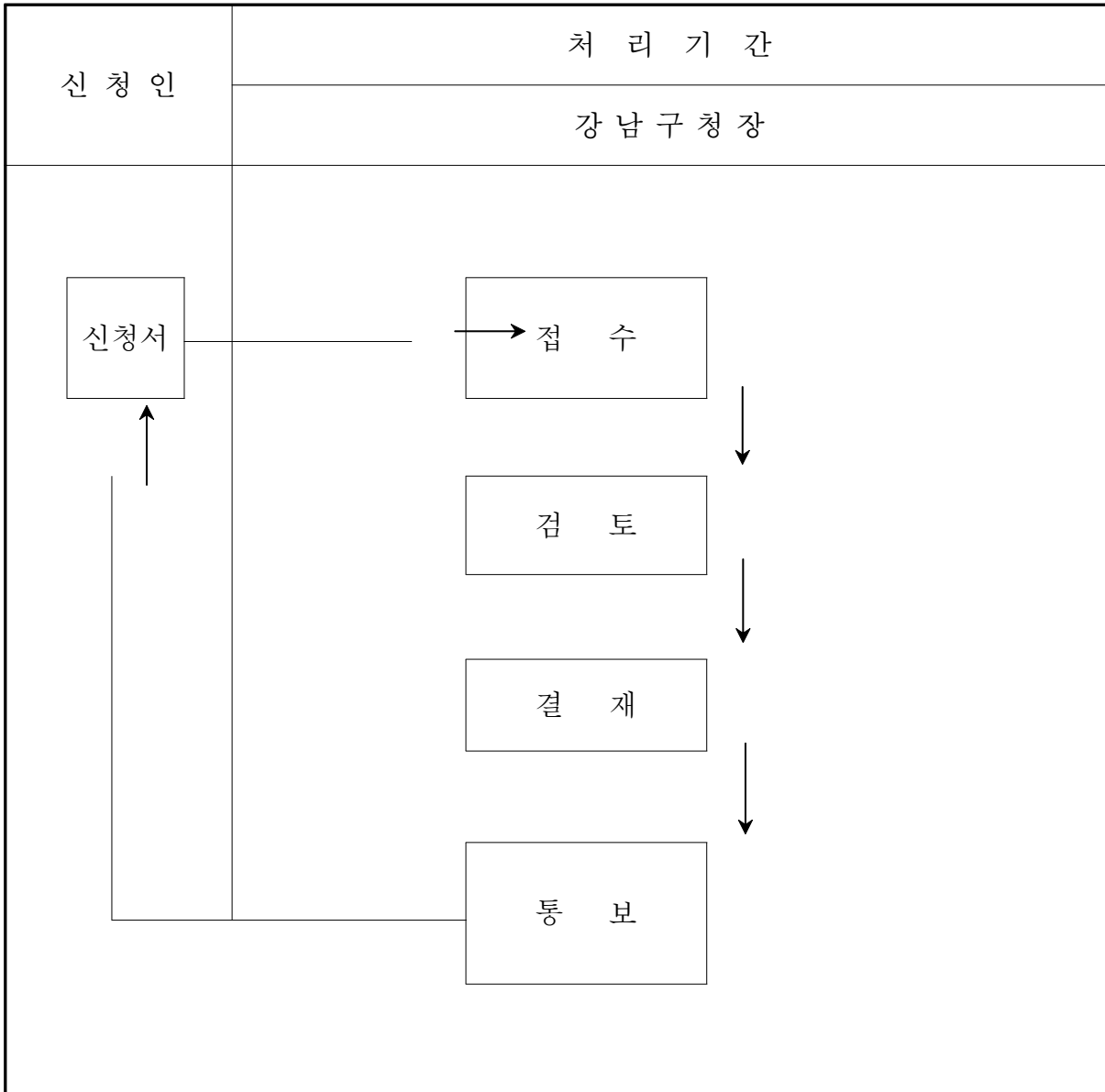
강 남 구 청 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2매 2.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축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축 기 간: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p>(앞 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p><p style="text-align: center;">금연지도원증</p><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60%; text-align: center;"><p>사 진</p><p>3cm×4cm</p><p>(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div><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p><p style="text-align: center;">강남구청장</p></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60mm×90mm</p> <p style="text-align: center;">(색상 : 연파랑)</p>
<p>(뒤 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p>소 속:</p><p>성 명:</p><p>생년월일(성별): ()</p><p>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p><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p style="text-align: center;">강남구청장 직인</p></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p>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p><p>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p>☎ 전화번호 : 02-3423-7033</p></div>
<p>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p>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동 규칙 제4조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p> <p>제4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p> <p>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p> <p>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p>

<신 설>

<신 설>

<신 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
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
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
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
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
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
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
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
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

<신 설>

<신 설>

<신 설>

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

<신 설>

역적 범위) 금연지도원은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5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에 신설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금연지도원 선발, 위촉, 활동지원 및 활동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삽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규정함